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2023.01.19.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목차

	전문	-----	1
제1장	총칙	(제01조~제11조) -----	1
제2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12조~제17조) -----	2
제3장	운영위원회	(제18조~제23조) -----	4
제4장	감사위원회	(제24조~제30조) -----	4
제5장	비상대책위원회	(제31조~제37조) -----	5
제6장	학생인권위원회	(제38조~제42조) -----	6
제7장	집행부	(제43조~제44조) -----	7
제8장	전공학생회	(제47조~제50조) -----	7
제9장	동아리연합회	(제51조~제55조) -----	8
제10장	유학생회	(제56조~제60조) -----	8
제11장	장애학생회	(제61조~제65조) -----	9
제12장	재정	(제66조~제73조) -----	10
제13장	선거	(제74조~제78조) -----	11
제14장	회칙 및 세칙	(제79조~제86조) -----	11
	부칙	(제01조~제02조) -----	14

전문

한국성서대학교는 성서의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훈련과 진리탐구에 앞장서 나가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주력하는 공동체이다.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는 본교 학생(성서인)의 화합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주체적으로 제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는 성서인의 의사에 따라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통해 학교를 이끌어가고자 최선을 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하며, 성서인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한국성서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운영】

본회는 회원에 의하여 성서적이며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원칙하에 본회의 회칙에 의해 운영된다.

제5조【적용 범위】

- ① 본 회칙은 본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하며, 모든 기구의 회칙 중 가장 상위 회칙으로 한다.
- ② 별도의 회칙 또는 세칙이 없는 기구의 경우에는 상위 회칙을 따른다.
- ③ 각 기구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위 기구의 회칙을 따른다.

제6조【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한국성서대학교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단, 휴학 기간 동안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②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 ③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 ④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 ①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본회는 집회, 결사에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보장받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⑤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⑥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⑦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자치에 대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8조 [회원의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③ 본회와 본회의 각 기구는 제7조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의무를 지닌다.

제9조 [구성]

- ① 본회는 제2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1. 본회 회장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 2. 본회 집행부(이하 총학생회)
- 3. 전공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유학생회, 장애학생회

- ② 본회 기구는 아래와 같다.

의결기구: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구: 전공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유학생회, 장애학생회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특별기구: 비상대책위원회, 학생인권위원회

제10조 [협의]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각 기구는 학교 당국과의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 [활동제한]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건학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12조【지위 및 책임】

-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운영 및 총괄을 맡으며, 운영위원회 의장과 감사 위원장이 된다.
-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논의하는 학교 당국의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한다.
- ③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의 자유로운 학생활동 및 학습활동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 ④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 궐위 이외의 사유로 총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부총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된 해당 연도 2학기 종강일 익일부터, 이듬해 2학기 종강일까지 한다.

제14조【선출】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본 회칙 선거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감독하에 선출된다.

제15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투표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6조【업무 및 권한】

- ① 본 회의 운영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 ② 총학생회 임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③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활동 및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논의하는 학교 당국의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속기구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임무 완료 시 총학생회장의 결정으로 해체한다.
- ⑤ 본회의 전체 계획을 수립하여 수립한다.
- ⑥ 운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통해 총학생회와 산하기구의 예산 및 결산을 검토한다.
- ⑦ 본회의 대외 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 ⑧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후임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⑨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17조【권한대행】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보궐선거 전까지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전공학생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8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19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집행부의 총괄사무국, 전공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유학생회장, 장애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제20조 [의장]

- ①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 시에는 부총학생회장이 맡는다.
- ②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 운영위원회 중 한 명이 그 자리를 맡으며,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제21조 [소집]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1. 정기회는 학기당 1회 이상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업무 및 권한]

- ① 본회의 예산 및 결산, 제반 사업을 심의, 의결하여 승인한다.
- ② 총학생회 회칙개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결한다.
- ③ 학생회비 및 지원금을 사용하는 자치기구의 재정운동을 감사한다.
- ④ 회의를 통해 의결된 내용을 기반으로 학교 당국의 본회를 대표하여 건의안을 제출한다.
- ⑤ 집행부와 산하기구는 연간사업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3조 [개회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참석자 중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감사위원회

제24조 [지위]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감사기구이다.

제25조 [권한]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원활하고 투명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독립기구로서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 받는다.

제26조【구성】

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집행부의 총괄사무국, 전공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유학생회장, 장애학생회장과 각 자치기구의 재정담당자로 구성된다.

제27조【위원장】

감사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제28조【소집】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한다.

1. 분기별 재정 감사를 실시해야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 또는 감사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감사 결과에 있어 피감사단위의 이의제기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9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와 산하기구는 연간예산안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0조【임기】

감사위원회의 임기는 당선된 해당 연도 2학기 종강일 익일부터, 이듬해 2학기 종강일까지 한다.

제5장 비상대책위원회

제31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기간 동안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32조【권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각각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부에 준하는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제33조【의무】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운영 및 의결 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지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임기 시작 48시간 이내에 본회의 회원에게 14일 동안 공고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

제34조【구성】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궐위 시로부터 48시간 이

내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여 구성한다.

제35조【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비상대책부위원장의 조건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운영위원회의 소속된 자
2.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

제36조【위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전원이 포함되며, 그 외의 인원은 구성원의 추천 및 공고를 통하여 의결을 거쳐 선정된 20인 이내로 한다.

제37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제26조[구성]과 같이 소집되어 해당 학기 또는 이듬해 2학기 종강일까지 한다. 단, 차기 총학생회 선출 시 모든 활동과 책임을 이임한다.

제6장 학생인권위원회

제38조【목적】

학생인권위원회는 본회 회원의 인권에 관한 일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학생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이다.

제39조【역할】

학생인권위원회는 한국성서대학교 학생의 인권 보장 및 인식 개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총학생회 산하의 특별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교내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회원의 의견 수렴
2.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 요구
3. 학내 교육권 및 인권 현황에 대한 공유

제40조【구성】

학생인권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유학생회장, 장애학생회장을 필수로 구성하며, 본회 회원 추천 및 지원을 통해 구성한다.

제41조【위원장】

- ①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 시에는 부총학생회장이 맡는다.
- ②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 유학생회장, 장애학생회장 중 한 명이 그 자리를 맡으며, 학생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제42조【소집】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유학생회장, 장애학생회장이 모두 선출된 후 위원장이 소집하

여 정식 소집을 논하여 결정한다.

제7장 집행부

제43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4조 [구성]

- ① 집행부는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총무, 서기, 회계가 포함된 총괄사무국, 각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 ② 업무수행을 위해 각 부장은 최대 2인의 차장을 둘 수 있다.
- ③ 부서의 조직은 필요에 따라 총학생회장이 집행부의 산하 기구를 신설 및 통·폐합할 수 있다. 단, 학교 당국의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업무 및 권한]

- ① 집행부는 총학생회장의 동의하에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 궐위 이외의 사유로 총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부총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집행부는 학우 권리 개선과 학교발전에 있어 최선을 다하며, 다음 집행부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④ 산하기구의 회장단의 권위 시 총학생회가 개입할 수 있다.

제46조 [임기]

집행부의 임기는 당선된 해당 연도 2학기 종강일 익일부터, 이듬해 2학기 종강일까지 한다.

제8장 전공학생회

제47조 [지위]

각 전공학생회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전공 학과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제48조 [구성]

- ① 각 전공학생회는 본 회원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해당 전공 학과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각 전공학생회의 임원단은 학회장, 부학회장, 총무, 회계, 서기 5명이며, 그 외에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를 포함하여 임원단 제외 총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49조 [전공학생회장단]

- ① 각 전공학생회장단은 해당 전공 학과 모든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 ② 각 전공학생회장단은 해당 전공 학과 학생회를 대표하여 학과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어 학생회의 사업계획과 입장을 표명한다. 단, 전공학생회장의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부전공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업무 및 권한】

- ① 각 전공학생회는 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지고 해당 학회의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 ② 각 전공학생회의 업무 및 권한 및 임기는 해당 전공학생회의 학칙에 따른다.

제9장 동아리 연합회

제51조【목적】

동아리연합회는 본교 학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다양한 캠퍼스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구성】

- ① 동아리연합회는 본회의 정식 등록된 모든 동아리로 구성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는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해 회장 1인을 둔다.

제53조【동아리연합회장】

- ①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원 중에서 선출하며, 동아리장들의 동의와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 선거는 해당 학기 10월 마지막 주에 이루어진다.
- ③ 동아리연합회장은 모든 동아리를 대표하여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동아리 사업계획과 입장을 표명한다. 단, 동아리연합회장의 부재시 14일 이내 재선거를 진행한다.

제54조【업무 및 권한】

-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각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동아리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제55조【임기】

동아리연합회장의 임기는 당선된 해당 연도 2학기 종강일 익일부터, 이듬해 2학기 종강일 까지 한다.

제10장 유학생회

제56조【목적】

유학생회는 유학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도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구성】

- ① 유학생회는 본회의 회원 중 유학생으로 구성한다.
- ② 유학생회는 자율적인 유학생 활동을 위해 회장 1인을 둔다.

제58조【유학생회장】

- ① 유학생회장은 유학생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유학생회장은 유학생을 대표하여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유학생의 사업계획과 입장을 표명한다. 단, 유학생회장의 부재시 14일 이내 재선거를 진행한다.

제59조【업무 및 권한】

유학생회는 유학생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한다.

제60조【임기】

유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된 해당 연도 2학기 종강일 익일부터, 이듬해 2학기 종강일까지 한다.

제11장 장애학생회

제61조【목적】

장애학생회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장,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구성】

- ① 장애학생회는 본회의 회원 중 장애학생으로 구성한다.
- ② 장애학생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회장 1인을 둔다.

제63조【장애학생회장】

- ① 장애학생회장은 장애학생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장애학생회가 선출이 안 될시 교학처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② 장애학생회장은 장애학생을 대표하여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장애학생의 사업계획과 입장을 표명한다. 단, 장애학생회장의 부재시 14일 이내 재선거를 진행한다.

제64조【업무 및 권한】

장애학생회는 장애학생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한다.

제65조【임기】

장애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된 해당 연도 2학기 종강일 익일부터, 이듬해 2학기 종강일까지 한다.

제12장 재정

제66조【원칙】

본 회의 각 기구는 자금운영에 있어 준수해야 할 규정을 두어 본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과 감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한 학생자치기구의 문화를 구축하고, 발전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7조【자산】

- ① 본회의 자산은 회원이 납부하는 총학생회비와 그 이자, 학교 보조금,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 ② 자산의 회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운영세칙 제2장 자산]을 따른다.

제6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본회의 임기와 일치한다.

제69조【총학생회비】

- ① 총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단,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지 못한 경우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기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② 총학생회비 관리는 총학생회장단과 집행부 총괄사무국의 회계가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단의 보궐 시 학교 당국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③ 총학생회비는 운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④ 각 기구는 그 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차용금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70조【총학생회비 지원】

총학생회비는 의결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의결기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총학생회장단이 제한하는 일정 금액으로 한다.

제71조【예산】

본회의 소속된 모든 자치기구는 연간 예산안을 편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2조【결산보고】

- ① 본회의 소속된 모든 자치기구는 결산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 본회 회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진다.
- ② 재원을 집행하는 기구는 예산 집행 시 모든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운영위원장이 정한 통일된 양식에 따라 일체의 경비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 ③ 총학생회비에서 지급되는 자치기구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자치기구 재원의 잔액은 차기 연도에 이월한다.

- ④ 학교 보조금은 집행 후 14일 이내에 학교 측에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⑤ 각 자치기구는 학기를 종료한 후 회계연도 분기에 따라 지출 내역에 관한 감사에 응해야 한다.
- ⑥ 본회의 재정담당자는 본회의 결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각 학기 종료시 진행되는 감사위원회의 재정 감사에서 공개한다. 단 2학기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끝나기 전에 진행, 공개한다.

제73조【재정운영세칙】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운영세칙에 의한다.

제13장 선거

제74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75조【선거권, 피선거권】

- ① 선거권은 본교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선거시행세칙에 따른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 ② 피선거권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선거시행세칙에 따른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76조【선거 시기】

선거 시기는 11월 중에 시행과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 1. 본회 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시행과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선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2. 선거 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7조【선거시행세칙】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제78조【보궐선거】

- ①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50일 이상인 경우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궐위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궐선거를 한다.
- ②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50일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가 각 전공학생회장 중 1인을 추천하여 총학생회장직을 계승한다.

제14장 회칙 및 세칙

제1절 회칙

제79조【발의】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된다.

1. 총학생회장이 발의한 경우
2.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연서(連署)를 통해 발의한 경우
3. 본회의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連署)를 통해 발의한 경우

제80조【회칙 개정안 공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운영위원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 신·구 조문 대비표
3. 회칙 개정안 발의자 및 회의 참여자 명단

제81조【회칙 개정안 의결】

- ① 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② 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참석자 중 2/3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한다.

제82조【회칙정리】

회칙에서 조항·자구·숫자 또는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보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단,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칙의 본 의도를 훼손하거나 악의적으로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83조【회칙공포】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72시간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절 세칙

제84조【세칙의 정의】

- ① 본회의 세칙은 회칙에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시행 사항을 위임하여 자세하게 명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 ② 본회의 세칙은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이 가능하다.

제85조【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
2.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재적위원의 2/3 이상의 찬성

제86조【회칙 및 세칙의 해석】

- ① 회칙 및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추후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칙에 의거하여 회칙개정을 진행한다.
- ② 회칙 및 세칙의 중요 사항과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회칙 및 세칙의 해석은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산하기구나 특별기구의 회칙의 경우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때로부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개정일 및 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1월 19일 개정하여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